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 기준 및 최대적재량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령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적합하여야 한다”를 “적합해야 한다”로 하고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”를 “물품적재장치”로, “적합하여야 한다”를 “적합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삼륜형”을 “삼륜형 및 사륜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

가. 개방된 구조일 것.

나.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, 길이는 윤간거리(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윤간거리를 말하며,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.)의 1.3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

다. 너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최대 너비 이내일 것

라.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×너비≥차량의 길이×너비×

0.3을 충족할 것

마.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

바.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

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삼륜형:”을 “삼륜·사륜형: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1조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) ①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<u>적합하여야</u> 한다.	제71조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) ①----- ----- <u>적합해야</u>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,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.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<u>적합하여야</u> 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적합해야</u> -----.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이륜자동차의 <u>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</u> 다음 각 호의 기준에 <u>적합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<u>물품적재장치는</u> ----- ----- <u>적합해야</u> 한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삼륜형</u>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	2. <u>삼륜형 및 사륜형</u> ----- -----
3. <u>사륜형</u>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<u>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</u>	3. <u>사륜형</u> 이륜자동차의 <u>물품적재장치는</u> 다음 각 목의 기준에 <u>적합할 것</u> <u>가. 개방된 구조일 것</u>

	나. <u>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, 길이는 윤간거리(「자동차관리법」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윤간거리를 말하며,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.)의 1.3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</u> 다. <u>너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최대 너비 이내일 것</u> 라. <u>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×너비≥차량의 길이×너비×0.3을 충족할 것</u> 마. <u>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</u> 바. <u>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13조(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)	제113조(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	② ----- ----- -----

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.	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최대적재량	2.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삼륜형</u> : 100킬로그램 이하	나. <u>삼륜·사륜형</u> : -----